

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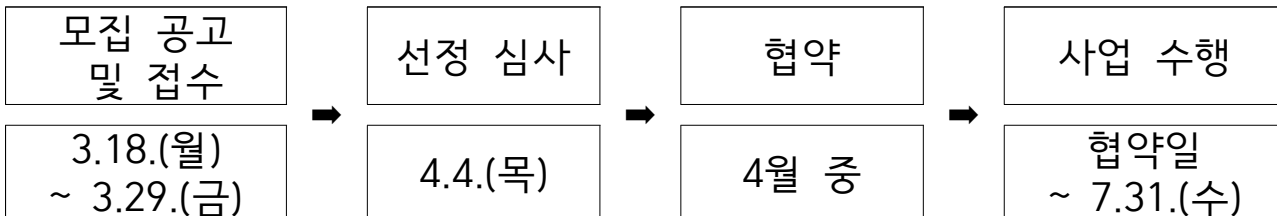
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기반 마련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3월 15일
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

I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** :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기반 마련 및 판로개척·활성화
- 참여대상** : 경남도 내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*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 등
- 사업기간** : 2024. 3. ~ 7.
- 지원내용** : 홍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*기업당 최대 2,000천원 이내 (자부담 10%, 부가세 별도)

추진절차



- 주최/주관** : 한국남동발전(주) /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
- 문의처** :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전략본부, 055-286-7972

II 지원 내용

- 사업비 : 총 10,000천원
-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2,000천원 / 5개사 이내
- 지원방법 : 간접지원(재화/서비스 공급업체에 주관기관이 대금 지급)
- **기업부담금 : 총사업비의 10% 이상 (부가가치세 별도)**
- 지원금 적용 예시

총사업비(A) (2,000천원)		부가가치세 등 총사업비에서 제외 (총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청기업 자체부담*)
보조금(B) (A×90% 이하) (1,800천원 이하)	참여기업 자부담분 (A×10% 이상) 200천원 이상	

※ 부가세 환급 처리를 위함

• 세부 지원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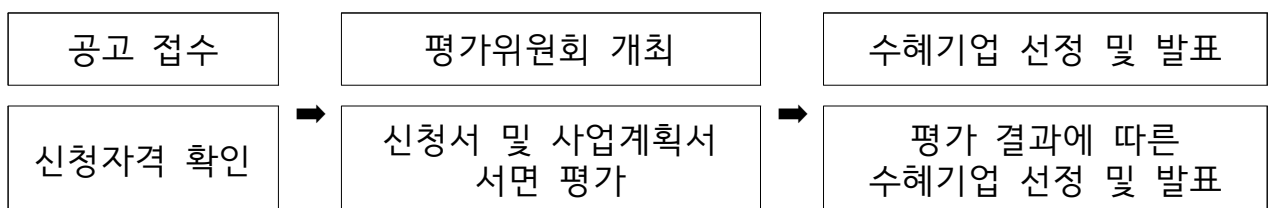
구 분	지원 내용(예시)
① 제품 촬영	- 제품 누끼컷, 연출컷, 상세페이지, 브로슈어 등 제품 홍보 이미지
② 영상 제작	- 제품 홍보 영상, 가이드 영상, 인서트 영상 등 홍보 영상물
③ 브랜드 개발	- 네이밍, 로고, 상표 등 브랜드 개발
④ 기타	- 품질인증, 시장 경쟁력 분석 등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내용
* 지원불가항목	- 참여기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, 자체 수행 가능한 범위의 사업 비용 - 유형의 자본재 구입 비용 - 관납료, 부가세 등 각종 공과금 및 세금 - 사업진행에 직접 관련 없는 비용

III 선정절차

• 추진절차

절 차	일 정	비 고
모집 공고 및 홍보 ↓	3.15.(금) ~3.29.(금)	홈페이지 및 SNS 등 게시
사업계획서 접수 ↓	3.18.(월) ~3.29.(금)	제출 및 접수처: modu@moducoop.com
평가위원회 개최 ↓	4.4.(목)	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 *서면심사
협약체결 ↓	4.11.(목)	수혜기업 대상 협약 체결
사업 수행 ↓	협약일 ~7.31.(수)	기업별 사업 수행 추진 *평가결과등에 따라 사업계획서 협의
결과보고서 제출	~7.31.(수)	사업 종료일 전까지 수행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
• 평가절차



• 평가기준

구 분	세부평가 항목	배 점
사업계획	- 사업 필요의 타당성 및 수행 계획의 구체성 -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- 제품 홍보 판매 전략의 실효성	60
기대효과	- 콘텐츠를 통한 제품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- 콘텐츠의 파급효과	40
총 점		100

IV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 : 3.18.(월) ~ 3.29.(금) 18:00까지
*신청기간 엄수
- 제출방법 : 이메일(moducoop@moducoop.com) 제출
- 문의처 :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, 전략본부 055-286-7972
: 카카오톡 채널 「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」
- 신청서류 : 아래 표의 서류를 구비하여 PDF파일로 제출

연번	제출서류	비고	
1	지원사업 신청서	[서식1] 활용	
2	사업계획서	[서식2] 활용	
3	지원사업 성실 수행 서약서	[서식3] 활용	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[서식4] 활용	
5	사업자등록증명원	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	
6	사회적경제기업 유형*에 따른 증빙 서류	-	
7	최근 2년간 (2022년~23년)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 제표 확인원	-	
8	그 외 기업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(각종 지재권, 6차산업인증, HACCP인증 등)	-	
9	세부산출내역 및 선정의 근거 서류	견적서, 비교견적서	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
		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	-
		공급업체 포트폴리오	-

V

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(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
- 간접지원 원칙(재화/서비스 공급업체에 주관기관(모두의경제)이 직접 대금 지급)
(예) (선정기업) 사업비 요청 ⇨ (주관기관) 사업비 요청 검토 후 통보 ⇨ (공급업체) 선정기업에 납품 및 서비스 제공 ⇨ (선정기업)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⇨ (주관기관) 사업비 정산서류 검토 후 공급업체에 대금 지급
- 공급업체는 선정기업에서 직접 지정
- 보고 의무 및 협조 사항
 - 선정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성과공유회, 판로지원 등의 행사 참여 및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 - 중간평가를 위한 중간보고서, 사업종료 후 사업 완료보고서 등을 요청받을 시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함
- 지원철회
 - 사업수행 개시 후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되거나, 중간평가 시 기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
 - 목적 외 사업비 사용, 개인자금으로 유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
-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제출기한 경과,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 현황이 신청서와 다른 경우
 - 선정 기업의 대표자가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사업계획서가 이미 지원된 사업과 중복일 경우
 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
 -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경우